

업무협약서

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지역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상호 양 기관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- 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 증진 협력사업
- ② 「제주인재육성 장학금」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
- ③ 기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협약조정 및 비밀유지) 제2조에 따른 협력분야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별도로 협의·처리하며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정보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
제4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5조(협약조정)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상호협력 등)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력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② 양 기관은 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나가기로 한다.

제7조(협약서 교환)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6월 15일